

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규정

제15조 (결격사유)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,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
6. 퇴직한 자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다만, 본인의 원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렬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